KOSHA GUIDE

C - 75 - 2013

4.1 일반안전사항

- (1) 조경공사는 현장여건과 설계도서(도면 및 시방서 등)를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모든 작업은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장의 지형,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- (5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, 차량계 건설기계,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반경내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을 출입금지 조치 또는 <그림 2>와 같이 유도자 배치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또한 장비 운행시 승차석외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.



<그림 2> 장비의 유도자 배치